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2. 11. 9 선고 2022가단1057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C

피 고 D

변 론 종 결 2022. 11. 2.

판 결 선 고 2022. 11. 9.

주 문

1. 피고와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20. 10. 30.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E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내지 1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0. 11. 17. 접수 제1855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별지 목록 제14항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0. 11. 17. 접수 제1856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E에 대한 채권

1) 주식회사 F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5134652호로 E를 상대로 하여 신용카드이용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5. 26. 'E는 주식회사 F에게 11,356,956원 및 그 중 6,006,034원에 대하여 2016.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6. 6. 22. 확정되었다.

3) 이후 원고는 주식회사 F로부터 E에 대한 위 판결금 채권을 양수하였고, 2022. 3. 29. 위 법원으로부터 승계집행문을 교부받았으며, 2022. 4. 4. 위 승계집행문 등본이 E에게 송달되었다.

나. 상속재산분할협의 등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지분권자였던 망 G는 1987. 12. 29.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H, 피고, E, I이 있었다.

2) 위 공동상속인들은 2020. 10. 30.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가 상속받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0. 11. 17. 접수 제18559, 1856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E의 재산상태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E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1/4 지분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2 내지 11,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J행정복지센터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분할협의 이전에 원고가 양수한 E에 대한 채권이 이미 발생한 상태였으므로, 원고의 위 양수금 채권은 이 사건 분할협이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이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E가 사실상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고,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E의 사해의사 또한 인정할 수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E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E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1/4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E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망 G의 사망 당시에는 E에게 부채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분할협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73377 판결 등 참조), 망 G의 공동상속인들이 2020. 10. 30.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한 사실(갑 제7호증 참조), 2020. 10. 30. 당시 E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약 당시 E에게 채무가 있다는 사실이나 E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항변하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E)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나 수익자(피고)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피고)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되는바(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분할협약 당시 선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기범

[별지]

1. 경상북도 의성군 K 대 793㎡
2. 경상북도 의성군 L 임야 15868㎡ (1정6단보)
3. 경상북도 의성군 M 임야 1587㎡ (1단6무보)
4. 경상북도 의성군 N 전 1531㎡ (463평)
5. 경상북도 의성군 O 전 643㎡
6. 경상북도 의성군 P 전 114㎡
7. 경상북도 의성군 Q 답 747㎡ (226평)
8. 경상북도 의성군 R 전 648㎡ (196평)
9. 경상북도 의성군 S 임야 11504㎡ (1정1단6무보)
10. 경상북도 의성군 T 임야 1983㎡ (2단보)
11. 경상북도 의성군 U 임야 59504㎡ (6정보)
- (D의 공유지분 6분의1)
12. 경상북도 의성군 V 임야 69818㎡ (7정4무보)
- (D의 공유지분 7분의1)
13. 경상북도 의성군 W 임야 64661㎡
- (D의 공유지분 7분의1)
14. 경상북도 의성군 X 임야 40860㎡
- (D의 공유지분 2분의1)

